

의안번호	2215834
의 퇴 인	백선희의원
회 답 일	2026.5.22.
추계번호	26D0006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45억 9,900만원(연평균 9억 2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포함	920	920	920	920	920	4,599	9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8조의2 (징계위원회)	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되, 징계권자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국방부장관, 합참의장·참모총장, 대장급 사령관 및 이에 준하는 직위는 7명, 장성급 군단장·사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5명, 연대장·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3명으로 함(제2항)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교와 인사·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. 다만,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(제3항)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8조의2 (징계위원회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징계권자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다르게 규정하고,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사·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개정안은 징계권자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국방부장관, 합참의장·참모총장, 대장급 사령관 및 이에 준하는 직위(이상 “대장급”으로 칭함)는 7명, 장성급 군단장·사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5명(이상 “장성급”으로 칭함), 연대장·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(이상 “영관급”으로 칭함)은 3명으로 하도록 하고, 각 징계위원회마다 민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추계에서는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징계권자별 징계위원회 개최횟수 및 민간위원 구성안을 기초로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함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징계위원회 회의참석수당

- 징계위원회 개최횟수는 최근 5년간 징계권자별 징계위원회 평균 개최횟수를 적용함

[표 2] 징계위원회 개최현황

(단위: 회)

	2021	2022	2023	2024	2025	평균
제1호: 대장급	126	152	129	151	147	141
제2호: 장성급	1,040	1,033	1,111	1,119	1,011	1,063
제3호: 영관급	679	721	701	617	574	658

자료: 국방부

- 민간위원 수는 개정안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인원 및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라 대장급과 장성급은 2명, 영관급은 1명으로 가정함
 - 개정안은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을 대장급은 7명, 장성급은 5명, 영관급은 3명으로 하고 징계위원회마다 민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국방부의 제출자료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대장급과 장성급은 2명, 영관급은 1명으로 가정함
 - 추계기간 징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징계위원회 1회당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30만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징계위원회 개최횟수, 민간위원 수,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3] 징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회, 명, 백만원)

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징계위원회 개최횟수	대장급	141	141	141	141	141	—
	장성급	1,063	1,063	1,063	1,063	1,063	—
	영관급	658	658	658	658	658	—
민간위원 수	대장급	2	2	2	2	2	—
	장성급	2	2	2	2	2	—
	영관급	1	1	1	1	1	—
회의참석수당		0.3	0.3	0.3	0.3	0.3	—
추가재정소요	대장급	85	85	85	85	85	423
	장성급	638	638	638	638	638	3,188
	영관급	198	198	198	198	198	988
	합계	920	920	920	920	920	4,599

주: 단수조정에 따라 계산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45억 9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포함	920	920	920	920	920	4,59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